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15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김병주 · 민병덕 · 황명선
윤후덕 · 허 영 · 박선원
서미화 · 이성윤 · 김태선
추미애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상 ‘구매사업’ 추진 시, 시험평가에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보상되지 않음. 또한 ‘방산 육성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점수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발생하는 부담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

이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매사업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방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3(국방중소·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19조에 따라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 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 비용 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u> <u>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 항에 따라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선정에 참여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에 참여 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일 부를 보상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 용 보상의 지급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u>